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권고 등 〉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6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등의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표시 권고 등	2

I. 개요

1. 오세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25.

(3) 회 부 일 : 2025.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등의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권고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u>제4조의3(소비기한 등 표시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u>

현행	개정안
	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 식품 기한표시제도 개요

- 식품 기한(期限)표시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품질 저하, 부패·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하고,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며,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임.

□ 또한, ‘소비기한(Use by date)’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오인으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 8.17.)으로 신설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수입하는 식품등(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일을 달리 함)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통기한’을 대체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음.

□ 식품유형별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제4조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에 따른 식품유형 290개 중 대부분의 식품유형(223개)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당류, 잼류, 장류, 김치류 등 38개 유형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류, 얼음류, 설탕류 등 29개 유형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1) 참고로, 현행법 제4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소비기한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연월일 등 표시대상 식품유형 〉

구 분	식품종	식품유형	개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당시럽류	당시럽류	1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2
	포도당	포도당	1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2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3
	잼류	잼, 기타잼	2
	장류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2
	식초류	발효식초, 희석초산	2
	김치류	김치속, 김치	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2
	조림류	조림류	1
	발효주류	맥주	1
	전분류	전분	1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2
제조 연월일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4
	아이스 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5
	빙과	빙과	1
	얼음류	식용얼음	1
	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2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6
	발효주류	청주, 과실주	2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7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4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1

다. 검토의견

- (품질유지기한의 정의 신설) 현행법 제4조2)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 규정된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13호에서는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가. 재질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도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을 “식품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권고)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는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 등에 대해서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많은 소비자가 제조일이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매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임.

- 현재 발효주류라고 하더라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탁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시행한 ‘주류 및 빙과류의 안전성 평가 연구’³⁾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및 빙과류(아이스크림 포함)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도 세균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그러나,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녹았다가 얼기를 반복할 때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증식할 수 있으며,⁴⁾ 202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식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입원하여 해당 아이스크림을 전부 리콜 조치한 사례가 있었음.⁵⁾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섭취 시점 또는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안내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표시의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동일한 식품유형 내에서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 식품등과 기존대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한 식품등이 혼재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3) 주류 및 빙과류의 안전성 평가 연구(2018. 10. 부경대 산학협력단)

4) “아이스크림 이러면 주의”.....식중독주의보(뉴스저널리즘, 2024.7.2.)

5) 성에 잔뜩 켜 아이스크림 먹었다간?(헬스조선, 2023. 7. 7.)

표시의무자는 규제 예측이 어려워지고 포장재 교체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아이스크림에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은 아이스크림에 대해 날짜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업체가 품질유지기한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⁶⁾

□ 한편, 법체계와 관련하여, 안 제4조의3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에서는 음식에 대한 정의나 음식등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음식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이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식품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음식등”을 “식품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주류 및 병과류의 안전성 평가 연구(2018. 10. 부경대 산학협력단)

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현재 법률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명확히 ‘품질유지기한’ 정의를 두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매년 검토하여 ‘품질유지기한’ 등 표시를 권고하자는 개정안은 정책 지속성 및 업계의 규제 예측성 측면에서 소비자와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현행 체계대로 사전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동일한 식품에는 일관된 날짜표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용곤란

- ‘소비기한 등’ 표시 권고 조항 신설될 경우 사실상 의무에 준하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일부 품목에만 권고 적용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및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현행처럼 제조연월일 표시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소비기한 등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 낭비로 판단됨.
- 아울러, 소비기한 설정 실험, 날인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제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 인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 교육·홍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